

사단법인 충청북도축구협회 정관

제.개정연혁

- 2013. 07. 19 제정
- 2013. 09. 27 충청북도 승인
- 2014. 06. 05 개정
- 2016. 06. 20 개정
- 2017. 02. 10 개정
- 2018. 01. 23 개정
- 2019. 01. 29 개정
- 2020. 01. 16 개정
- 2021. 02. 25 전부개정
- 2021. 07. 09 충청북도 승인
- 2024. 01. 26 개정
- 2024. 02. 05 충청북도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충청북도체육회(이하 '충북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및 제34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단법인 충청북도축구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4.01.26.>

②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충청북도 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Chung Buk Football Association(약어 CBFA)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충청북도의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구를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종목단체 등 중앙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도내 유일한 단체로서 충청북도를 대표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지역,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4조(가맹)

협회는 충북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 도내 축구를 대표하여 대한축구협회에 가입하며, 상기 단체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존중한다.

제5조(윤리강령 및 축구인 헌장)

협회,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경기 및 선수중개인 등은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인 헌장 및 FIFA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 주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55번지 청주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다.

제7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 경기의 승인 및 운영
 - 가. 회원단체의 경기
 - 나. 외국팀과의 경기
 - 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 라. 기타 협회 주최, 주관 경기
 - 마. 경기규정 제정, 집행 등 경기운동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축구행정 및 지원
 - 가. 축구일반 행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 나. 축구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3.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 나. 지도자, 심판의 양성 및 관리
 - 다. 축구전문 행정인 양성 및 관리
4. 축구인프라 구축
 - 가. 축구시설 확충 및 지원
 - 나. 축구 저변 확대
 - 다. 축구자료의 축적 및 관리
5. 홍보
 - 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업무 홍보
 - 나. 각급 대표팀 및 경기 홍보

6. 복지 및 권익보호

- 가. 협회, 회원단체 등의 복지 및 권익 보호
-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7. 내부관리

- 가. 협회운영, 시설관리, 유지 및 이와 관련된 공인

8.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

- 가. 장·단기 축구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계획 수립

9. 기타 협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② 협회는 시·군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도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③ 협회는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이익의 제공)

협회는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임)

협회는 자체 사업을 위임할 수 있으나,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재위임할 때는 대한축구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

- ①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을 제11조의 절차를 거쳐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 : 시·군협회 및 도풋살연맹
 - 2. 준회원 : 위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팀, 등록된 선수, 등록된 지도자, 등록된 심판
- ② 시·군협회는 시·군 풋살연맹을 둘 수 있다.

제11조(가입 및 등록)

- ① 시·군협회 및 도연맹은 협회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② 시·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③ [시·군협회](#) 및 도연맹은 회원 가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01.26.>

1. 신청단체의 총회 의결사항 및 정관
2. 선임된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첨부)
3. 회원명단
4. 사업계획 및 예산
5.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협회의 정관, 경기규칙, 각종 규정, 위 단체의 결정사항 및 협회가 정하는 분쟁 해결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④ 등록팀은 협회가 제정한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협회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⑤ 지도자, 선수는 협회 등록 팀의 선수, 지도자로 등록함으로써, 심판은 협회 등록을 함으로써 각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2조(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와 사업에 참가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5.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해 통보를 받을 권리
6. 기타 협회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4.01.26.>

1.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
2.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에 참가
3. [시·군협회](#) 및 도연맹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정하는 권리의 행사
4. 기타 협회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4.01.26.>

1. FIFA, AFC, 충북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및 협회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2.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대한축구협회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3.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4.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5.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임원선임 결과를 협회에 보고 할 의무
 6. 자체 이사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 할 의무
 7. 회비 등의 납부
 8. 축구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9. 협회 가입 시 본 정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
 10. 협회가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받을 의무
 11. 위 조사 및 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충북체육회,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하여 징계할 의무
- ② 준회원 및 프로 리그에 참가하는 충북연고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되, 개인회원에게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01.26.>
1. 협회 등록시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2. FIFA, AFC, 대한축구협회, 충북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3.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협회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4.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등의 납부
 5. 축구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6. 시·군협회와 도연맹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제14조(회원 임원의 선출 보고 등)

- ① 정회원 단체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하고, 시·군협회는 협회로부터 인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연맹은 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 단체의 임원 선임절차가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협회는 정회원 단체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② 등록팀의 임원은 등록규정에 보고하고, 등록 후 변동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등록팀의 관리)

- ① 협회는 등록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② 협회는 정회원 단체와 등록팀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회원단체 간에 불필요한 중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한다.

제16조(회원단체 등의 상벌)

- ① 협회는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단체 등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회원 에 대한 징계 등)

① 등록팀을 제외한 정회원에 대한 권리제한, 자격정지, 제명에 대한 조치는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4.01.26.>

1. 권리제한 및 자격정지 : 정회원 단체가 제13조의 의무 사항을 심각히 위반하였을 때는 이사회 의결로 차기 총회 시까지 임시로 회원단체의 제12조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자격정지의 임시조치를 당한 정회원 단체가 차기 총회 의결 시까지 협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
2. 제명 : 정회원 단체가 협회에 대한 재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FIFA, AFC, [대한축구협회](#),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을 심각히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당 회원단체에 대하여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이외의 정회원에 대한 제재처분과 회원 소속 임직원, 준회원에 대한 징계는 협회 징계기구가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탈퇴)

① 정회원은 협회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협회에 대하여 탈퇴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협회 이사회 의 승인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록팀은 협회, 정회원 단체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등록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9조(구성)

협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제20조(구성원 등)

협회는 위 제19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4.01.26.>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전무이사 1인
 4.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 ② 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의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개정 2024.01.26.>
- ③ 협회의 임원은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01.26.>
-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⑤ 협회의 회장 및 전무이사(사무국장)는 동일종목 시·군협회의 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4.01.26]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 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01.26.>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충북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1.26.>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2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01.26.>

제22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개정 2024.01.26.>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2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01.26.>

④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충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협회는 충북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북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③ 선거인단의 구성,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3천만원)의 금액 등 협회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충청북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위 제3항의 회장선거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충북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준회원단체에 한 한다. <개정 2024.01.26.>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40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협회의 임직원은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시·군체육회, 시·군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시·군체육회, 시·군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01.26.>

④ 협회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충북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⑤ 충북체육회는 협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01.26.>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충북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선임)

-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그 선임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 ② 전무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4.01.26.>
- ④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4.01.26.>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대표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삭제 <2024.01.26.>
 4. 삭제 <2024.01.26.>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변호사 또는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을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의 선임대상은 제33조제1항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⑦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⑧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 ⑨ 협회는 임원의 선임 결과를 충북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01.26>
[제목개정 2024.01.26.]

제27조(임원인준 등)

- ① 회장은 구비서류(대한축구협회 인준동의서 포함)를 갖추어 충북체육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② 협회는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충북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겸직제한)

-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도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협회의 임원이 다른 도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협회의 임직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③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시·군협회 임원은 해당 종목의 다른 시·군협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4.01.06>

[제목개정 2024.01.26]

제29조(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1.26.>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삭제 <2024.01.26.>

③ 삭제 <2024.01.26.>

④ 제31조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제목개정 2024.01.26]

제3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1.26.>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충북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⑥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대한축구협회 또는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충북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01.26.>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충북체육회와 충북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충북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4.01.26.>
- ⑧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⑨ 시·군·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30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01.2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4.01.26.>

5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4.01.26.>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충북체육회와 충북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충북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01.26.>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충북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1.26.>

② 충북체육회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개정 2024.01.26.>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1.26.>

1. 제26조제8항에 따라 충북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군협회, 도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5장 대의원총회

제33조(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함)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개정 2024.01.26.>

1. 정회원 단체 대표 각 1인
2. 프로 리그에 참가하는 [충북연고팀](#) 대표 각 1인

제34조(대의원 자격)

- ① 정회원 단체장 및 [프로 리그에 참가하는 충북연고팀](#) 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단, 위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프로 리그에 참가하는 충북연고팀은 단장 또는 이사로 한다.\)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01.26.>
- ② 제1항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프로 리그에 참가하는 충북연고팀은 단장 또는 이사로 한다.](#)) 1명이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24.01.26.>
-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④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⑥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시·군협회](#)나 연맹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01.26.>
- ⑦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3조](#)의 대의원 구성이 어려울 때에는 충북체육회 승인을 받아 시·군협회의 장, 등록팀,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및 협회의 이사를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4.01.26.>
- ⑧ 협회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충북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대한축구협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결사항)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01.26.>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정회원 단체의 가입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7. 명예 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전회 회의록의 승인
9. 이 규정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의 중요사항

제3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24.01.26.>
- ⑤ <삭제> <2024.01.26.>

제37조(임시총회의 소집)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회원 단체 대표자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30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의 권위 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총북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③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38조(의장)

-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 ②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 ④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4.01.26.>

제3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 할 수 없다. <개정 2024.01.26.>
-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군협회**(도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01.26.>

제40조(임원의 불신임)

-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

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4.01.26.>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1.26.>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01.26.>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목개정 2024.01.26]

제42조(임원의 발언권)

①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사규정)

① 협회 사무국은 총회 의사록을 작성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1.26.>

제6장 이사회

제4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46조 (의결사항)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1.26.>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무이사의 임면 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중요사항

제47조(이사회 소집)

-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01.26.>
-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1.26.>

제48조 <삭제> <2024.01.26.>

제49조(의결 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1.26.>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④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 ⑥ 이사회 의결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5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 ①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참석과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52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01.26.>
-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단,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제56조에 의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4.01.26.>

⑥ [<삭제>](#) <2024.01.26.>

⑦ [<삭제>](#) <2024.01.26.>

⑧ [<삭제>](#) <2024.01.26.>

[제목개정 2024.01.26.]

제53조 [<삭제>](#) <2024.01.26.>

제54조 [<삭제>](#) <2024.01.26.>

제55조 [<삭제>](#) <2024.01.26.>

제56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해당 협회](#) 및 [시·군협회](#)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01.26.>

② [<삭제>](#) <2024.01.26.>

③ [<삭제>](#) <2024.01.26.>

④ [<삭제>](#) <2024.01.26.>

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01.26.>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충북체육회와 충북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⑦ 이 정관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충북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57조 [<삭제>](#) <2024.01.26.>

제58조 [<삭제>](#) <2024.01.26.>

제59조 [<삭제>](#) <2024.01.26.>

제60조 [<삭제>](#) <2024.01.26.>

제6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가 설치하는 제52조 및 제56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01.26.>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③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북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1.26.>

[제목개정 2024.01.26.]

제8장 시·군협회

제62조(시·군협회의 설치 등)

- ① 시·군협회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 ② 시·군협회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군협회는 시·군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동호회 또는 클럽 등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63조(시·군협회의 총회)

시·군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 대의원총회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시·군협회의 규정 등)

① 시·군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1.26.>

② [감사 중 회계감사의 자격은 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1.26.>

제65조(시·군협회 임원인준 등)

- ① 시·군협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1.26.>
- ③ 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협회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충북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④ 시·군협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66조(정관 등 승인)

- ① 시·군협회는 제64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협회의 정관(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② 시·군체육회는 시·군협회가 정관(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본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4.01.26.>
- ③ 시·군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4.01.26.]

제67조(이의신청 및 감사)

- ① 시·군협회는 본 협회에 시·군체육회의 정관(규약)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북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시·군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시·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충북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충북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충북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충북체육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충북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충북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9장 연맹

제69조(도연맹의 설치 등)

① 도연맹은 해당 종별 등록팀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설치 및 해산권은 협회에 있다.
② [협회는 도연맹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01.26.>

1. [정관\(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협회는 도연맹에게 도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신설 2024.01.26.>

제70조(도연맹의 총회)

- ① 도연맹의 총회는 1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 자격은 도연맹이 정한 일정 비율의 각 등록팀 대표자로 한다.
- ③ 도연맹의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1월 15일 이전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 ④ 총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한축구협회 표준규정에 따른 [도연맹](#)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01.26.>

제10장 대한축구협회와의 관계

제71조(권리)

협회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대한축구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대한축구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대한축구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
5. 기타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제72조(의무)

① 협회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4.01.26.>

1. FIFA, AFC 및 대한축구협회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2.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대한축구협회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3.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 할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4. 협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5. 협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당해년도 수지에 산서, 임원선임 결과를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할 의무
6. 협회 이사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할 의무
7. 회비 등의 납부
8. 축구관련 분쟁 시 대한축구협회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9. 협회 가입 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10. 대한축구협회가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받을 의무
11. 위 조사 및 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하여 징계할 의무

② <삭제> <2024.01.26.>

제11장 충북체육회와의 관계

제73조(권리)

협회는 충북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충북체육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
2. 충북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3. 충북체육회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4. 충북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북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

제74조(의무)

협회는 충북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4.01.26.>

1. 충북체육회 규약,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
2. 협회의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협회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
3. 정관, 선임임원, 조직의 변동에 관한보고
4.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충북체육회의 징계요청이 있을시 자체 심의·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보고
5. 충북체육회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른 회비를 충북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충북체육회 정관 제7조제3항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산 및 회계

제75조(수익사업)

협회는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6조(재원)

협회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1.26.>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목개정 2024.01.26.]

제77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4.01.26.>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4.01.26.>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신설 2024.01.26.>

④ 기본재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회 규정에 별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제78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충북체육회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개정 2024.01.26.>

③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④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은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1.26.>

[제목개정 2024.01.26.]

제79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0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01.26.>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목개정 2024.01.26.]

제81조(기금의 운영 및 회계처리)

- ①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기부금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4.01.26.>
 1. 정관 및 실제 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상 해산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제8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4.01.26.>

1.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협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협회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목개정 2024.01.26.]

제8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4조(회계감사 등)

- ① 협회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북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4조의2(총북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① 총북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와 시·군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② 충청북도지사, 대한체육회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총북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③ 총북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지사, 대한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북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총북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⑤ 총북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충청북도지사, 대한체육회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총북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⑥ 제4항에 따른 총북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총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⑦ 총북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도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총북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 ⑧ 총북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도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의 이사로 한다.
- ⑨ 협회는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6.>

제13장 사무국

제85조(업무)

사무국은 협회의 운용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86조(기능)

사무국은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제87조(조직)

-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 ④ 사무국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⑤ 사무국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⑥ 협회의 임원(감사는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정관 제31조, 총북체육회 규약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4장 분쟁

제88조(분쟁 조정)

- ① 각종 분쟁사항은 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협회 및 대한축구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 ② 협회는 협회,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경기 및 선수 대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 대한축구협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 당사자는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보칙

제89조(해산)

-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설립인가 취소(법인단체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개정 2024.01.26.>
-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제8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법인단체에 한정한다)를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제90조(정관 제·개정)

- ① 협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충북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② 충북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가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1.26.>
- ③ 협회의 정관은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개정 2024.01.26.>
- ④ 협회의 정관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1조(정관의 해석)

- ① 충청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정관에 우선한다. <개정 2024.01.26.>
- ② 협회가 충북체육회의 정관, 충청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충북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1.26.>

제92조(제한사항)

협회가 충북체육회의 정관 및 충북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충북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충북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충북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1.26.>

제93조(경영공시)

-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 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3. 09. 27)

제1조(시행일)

-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 ② 제정 및 개정된 정관은 대한축구협회와 충청북도체육회에 보고한 후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본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13년7월19일~2016년12월31일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법인설립자의 기명날인) 사단법인 충청북도축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14. 06. 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6. 06.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7. 02.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체육회 출범이후 충청북도종목단체규정에 의해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 01.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1.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1.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제43조의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본회의 승인을 받은 도 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만 운영한다.

② 이 정관 제21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7. 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1조(임원)제1항제2호에 따라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2024. 01.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임원의 겸직제한)제4항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되는 시·군협회 임원부터 적용한다.

기본재산목록

종별 (용도별)	수량(m ²)	평가액	비고
계			

부동산명세

구분	주소	면적(m ²)	취득일
토지			
건물			